**기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동아리 명칭)**

본 동아리는 기우회(棋友會)라 지칭한다.

**제2조(목적)**

본 동아리는 바둑 수련을 통해 바둑실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의 활동들 또한 목적에 있음을 명시한다.

**제3조(동아리 소재)**

① 2020년 학생회관의 238호를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은 동아리연합회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뀔 수 있다.

**제2장 임원진 및 운영진**

**제4조(임원진의 임기)**

① 임원진의 임기는 임원진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임원진의 선출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기는 최소 1학기이며 운영진의 투표 하에 학기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방학 기간 동안의 동아리 운영은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임원진이 이어서 한다.

④ 최소임기에 대한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운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5조(임원진 선출 방식)**

① 임원진은 운영진에서 선정한 임원진 후보를 본인과의 협의 후 선출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진 후보는 기우회 회원으로 한다.

② 임원진 선출 기간은 임원진이 퇴임 시기를 정한 후 운영진이 임원진 선출을 시작한다.

③ 운영진 판단 하에 차기 임원진은 부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진 및 운영진)**

① 기우회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한 명씩으로 정한다.

② 운영진은 현재의 임원진을 포함한 역대 임원진을 맡았던 동아리 회원으로 정의한다.

③ 회장이 부재할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부회장만 부재할 경우 권한의 이동은 없다.

⑤ 임원진이 모두 부재할 경우 운영진이 임원진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장 회원**

**제7조(회원 자격 및 의무)**

① 회원 대상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모든 회원은 매 학기마다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동아리뿐만이 아닌 교내에서 사회적 미풍양속에 저촉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④ 모든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⑤ 모든 동아리 회원은 임원진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가입 대상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학우는 가입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임원진 혹은 임원진대리에게 제출하거나 임원진이 요구하는 다른 방식을 따른다.

③ 임원진은 면담을 통해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본교 학우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번, 학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가입 가능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않되 임원진 판단 하에 바로 가입 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가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원진이 회원 가입을 승낙한 학으로부터 회비 납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탈퇴가 가능하다.

② 탈퇴하였던 학우는 재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1. 타당한 이유 없이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2. 법규, 사회의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임원진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동아리방 비밀번호를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5. 이외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동아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동아리 탈퇴 시 자진탈퇴에 한하여 운영진 회의 하에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⑤ 동아리 탈퇴 시 가입하여 제출한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의 종류에는 임원진회의, 운영진 회의, 동아리 회의가 있다.

1. 임원진 회의는 임원진만 투표가 가능한 회의를 의미한다.

2. 운영진회의는 운영진만 투표가 가능한 회의를 의미한다.

3. 동아리 회의는 동아리 회원만 투표가 가능한 회의를 의미한다.

② 회장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종류와 안건을 정할 수 있다. 단, 회칙에 어긋나는 범주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③ 회의의 참석대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5장 재정**

**제11조(수입)**

본 동아리의 재정은 회비와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제12조(회비)**

① 회비는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로 나눈다.

② 정기회비는 한 학기당 신규회원의 경우 1만원, 이외의 회원은 2만원으로 규정한다. 단, 운영진회의를 통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들에게 사유와 납부할 금액을 공지해야 한다.

③ 비정기회비는 행사 집행을 위해 회장이 특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비정기회비로 집행되는 행사의 경우 비정기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서 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⑤ 행사 집행 이후 남은 비정기회비는 참여자들에게 만원 단위로 분배하고 차액은 정기회비로 포함시킨다.

**제13조(지원금)**

①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외부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지원금이라 한다.

② 지원금은 회계에 지원금으로 표기하고 정기회비에 포함시킨다.

**제14조(집행)**

① 정기회비는 회장만 집행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회장 동의하에 운영진이 공동으로 집행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정기회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정기회비의 집행은 동아리 회원만 참석하는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기회비로 집행하는 행사는 정기회비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동아리 회원 참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동아리방에 비치할 비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비품은 회원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동아리를 대표하여 동아리 취지에 맞는 행사에 나가는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 참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비정기회비는 회장만 집행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결산보고)**

① 회비의 사용 내역을 성실히 남겨야 하며, 감사 등의 목적이 있을 시 공개한다.

② 동아리 회원은 회비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일주일 내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동아리 등록**

**제16조(등록)**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7장 부칙**

**제17조(세부회칙)**

제2조의 이외의 활동이란 바둑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드게임 등을 포함한다.

**제18조(회칙 개정)**

① 회칙 개정 요구는 동아리 회원 모두 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운영진 승인 시 운영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순 오탈자 정정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③ 회칙 변동 시 새로이 발효된 회칙은 제20조에 변동 내역과 발효일자를 기입한다.

**제19조(이외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회칙 발효)**

본 회칙 발효 2020.03.25.

제8조제3항에 회원가입희망자가 제시해야하는 개인정보에 “단과대학명”과 “학년”을 추가한다. 2021.12.28.